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697

발의연월일: 2022. 12. 6.

발 의 자:이명수·김수흥·김형동

김희곤 • 박덕흠 • 박성민

엄태영 · 이달곤 · 이태규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이태원의 핼러윈 데이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좁은 골목에 집중적으로 몰려 300여 명이 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음.

현행법상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의 경우 관리감독 주체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 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인과 운집이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제66조의11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1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의"를 "제5항까 지의"로 한다.

⑤ 지역축제의 주최자가 없고 대규모 인파운집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
전관리조치) ① ~ ④ (생 략)	전관리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지역축제의 주최자가 없고
	대규모 인파운집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축
	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
	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
	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u>⑥</u> <u>제5항까지의</u>
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